

#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조사·분석

## CONTENTS

I. 문제제기	1
II.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및 해외비교	2
III.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분석	8
IV. 결론 및 시사점	18

\* 작 성 : 한국정보화진흥원 ICT융합본부  
IoT기획팀 오정연 수석연구원  
선미란 선임연구원  
\* 문 의 : 02-6191-2019, oh.jy@nia.or.kr

## I 문제제기

- 빅데이터가 21세기 원유로 불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,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제도가 국내 빅데이터 활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
    - 국내 빅데이터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'법제도'문제를 지적
- ※ 국내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수요: 1위 빅데이터관련 성공사례 전파, 2위 빅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, 3위 빅데이터관련 기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順(NIA, '15)
- 빅데이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간 매쉬업을 통한 가치창출이 핵심인데, 이를 위한 데이터 거래 자체가 어려운 현실
    -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, 경직적 사전동의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효율적 빅데이터 서비스가 곤란

<데이터시장 필요성>



<데이터 거래가 어려운 이유>



자료: 2014 빅데이터시장현황조사, NIA, '14

- 해외의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함께 추구하는 입장으로, 최근 IoT, 빅데이터 등의 신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개선을 추진 중
-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현업에서 개인정보관련 법제도로 인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발굴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

## II

##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법제현황 및 해외비교

### 1 국내 현황

○ (일반법+개별법 체계) 기본법으로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 등 부문별로 법률 제정·시행

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」(온라인)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금융), 「의료법」(의료),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」(위치정보보호법) 등

- 수집·이용·제공 등 개인정보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기반

○ (정의규정)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)

-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

○ (동의규정) 개인정보처리 시, 사전동의방식(Opt-in) 채택

- 민간부문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수집·이용(제15조제1항) 및 제3자 제공 또는 공유 가능(제17조제1항)

○ (제재규정) 형벌과 행정벌 양자 모두 채택

※ 위법한 제3자 제공 시, 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(형벌)

※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시, 5,000만원 이하 과태료(행정벌)

○ (최근동향) IoT, 클라우드, 빅데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정 요구 증대

- 개인정보 정의규정 명확화, 처리 기준완화 및 opt-out방식에서의 전환 필요성 제기

※ 국내기업의 영업활동 지장 초래,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

## <참고: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 주요 이슈>

- **(모호한 정의규정)** 결합가능성만으로도 개인정보로 간주
  -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'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**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**로 개인정보 정의
    -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**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**을 포함
    - \* 처리자가 결합 대상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'잠재적 결합 가능성'만 있어도 개인정보로 간주
  - ☞ 불명확한 정의로 인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적용 대상 확대 우려
- **(엄격한 동의규정)** 개인정보처리 시 사전동의방식(Opt-in) 채택
  - 민간부문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수집·이용(제15조제1항) 및 제3자 제공 또는 공유 가능(제17조제1항)
    - \*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시 가입자에게 구체적 목적 등을 고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형(Opt-in) 제도를 채택
  - ☞ 빅데이터, IoT 등 신규서비스 및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
- **(과도한 제재규정)** 형벌과 행정벌 양자 모두 채택
  -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위반 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반면,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, 과태료, 형사처벌 등 차등 적용
    - ☞ 형사처벌 우려로 인해 사업 추진時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경향

## 2 해외 현황

### ① 일본

- 일본의 「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」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2003년 5월에 제정·공포되고 2005년 4월부터 전면 시행(기본법적 성격有)

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	
기본이념, 국가의 책무·시행, 기본방침의 책정 등	
<b>민간부문</b>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이 분야별로 정리	<b>공공부문</b> 국가행정기관(법률), 독립행정법인 등(법률) 지방공공단체 등(조례)

- (정의규정)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, 해당 정보에 포함되는 성명,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(다른 정보와 쉽게 조합할 수 있고, 그에 따라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포함)
- (동의규정) 사전동의방식(Opt-in) 및 사후동의방식(Opt-out) 복합 채택
  - 개인정보 취득은 이용목적의 공표 또는 본인에 대한 통지로 가능(제18조)
  - 정보주체에게 본인 의사에 따라 제3자 제공을 정지한다는 사전고지 시, 사전동의 없이 제3자 정보 제공 가능(제23조제3항)
  - 목적 외 이용 시 본인동의 필요(제16조)
- (제재규정) 위법한 개인정보처리에 직접적 형벌 규정하지 않음
  - ※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조치에 응하지 않을 시 6월 이하 징역 또는 300,000엔 이하 벌금(제56조)
- (최근동향)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, 빅데이터(Personal data) 등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 추진
  - ※ '14.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예고, '15.3 정부안 확정, 9.3일 중의원 본회의 가결, 성립
  - 개인정보 보호와 유용성 확보 위해 정의규정 명확화 및 본인 동의 없는 제공이 가능하도록 '익명가공정보' 신설
    - ※ 익명가공정보: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하고,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만든 데이터로 개인정보 주체 동의없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
  - 개인정보 취급 감시감독 권한을 가진 '제3기관(개인정보보호위원회)' 설치 및 국외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한 규정 명문화

## ② EU

- 「개인 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지침」 채택하여, EU회원국에 대해 개별 법률의 제·개정을 강제(1995.10.24.)

※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, 95/46/EC(이하 「개인정보보호지침」)

- (제정 근거) EU 「인권헌장\*」의 기본권인 개인정보보호(제8조), 「리스본 조약\*\*」 개인정보보호 권리보장을 위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법령 제정권한(제16조)  
\*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/ \*\*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
- 독립된 감독기구의 의무적 설치 및 EU 수준으로 적정한 개인정보보호 미비 시 국외이전 금지

- (정의규정) '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'에 관한 정보

※ '식별가능한 개인'이란 신분증 번호를 통하여 또는 신체적, 생리적, 정신적, 경제적, 문화적, 사회적 요소에 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를 통하여 작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(제2조제4항)

- (동의규정) 수집 등 처리에 있어 사전동의(Opt-in)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정당한 이용의 경우 사후동의방식(Opt-out) 채택 가능

- 개인정보처리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에 의해 가능하나(제7조제a항),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이나 공유가 허용(제7조제f항)
- 정보주체의 권리: 개인정보 처리 등 통지받을 권리, 처리된 정보의 수정, 삭제 및 차단 요구 권리(제12조), 정보 처리를 반대할 권리(제14조) 보유

- (국외이전) 제3국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 보장시 이전가능하나(원칙, 제25조), 정보주체의 동의, 계약이행, 공익을 위해 예외 인정(제26조)

- (최근동향) 각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, 비즈니스의 어려움 등 문제해결을 위해 「일반 정보보호규칙(안)」 마련

※ **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:** EU의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프레임워크로 기능하는 규칙, 별도 입법 없이 EU회원국에 적용될 단일 규제

※ 제정방안 제안(12.11) → GDPR 개혁 완료계획 발표(15.3) → 최종안 협상(15.6, 룩셈부르크 회의) → '15. 12.15. 법안 최종 합의

- 개인정보수집·처리 시 고지 및 사전동의(opt-in), 잊혀질 권리의 보장, 개인정보 이동성 규정, 국외이전 규정 세분화, 정보보호관 설치 의무 등 기업에 대해 포괄적 의무 부과

### ③ 미국

#### ○ (非 기본법 체계) 공공 통신·온라인 등 각 영역별 법제도 마련 및 공공/민간 부문 체계 분리

※ 이미 미국 연방대법원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 실정

- (공공부문) 예산관리실(OMB :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)에서 프라이버시법 집행, 연방정부 프라이버시정책 정립 및 예산관리차원의 제한적 역할 수행

- (민간부문) 연방거래위원회(FTC : the Federal Trade Commission)가 소비자보호관점에서 개별 프라이버시권 관련 보호법률 집행 및 준수여부 감독 담당

※ 소비자 신용정보, 공정한 거래관행,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등

※ 미국에서 개인정보처리 민간부문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(self-regulation) 또는 자기통제

#### ○ (동의규정) 산업분야·용도에 따라 상이하며, 사전동의 및 사후동의 방식 혼용

-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, 개별 부문 또는 영역별 사용 목적에 따라 사전동의의 요구 여부 다양

※ (공공부문) 개인 서면동의 없는 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공개금지(「프라이버시법」제552a(b))

※ (민간부문) 프라이버시권 침해 없는 한 자율규제에 맡겨, 개별법상 상이한 동의 구조

예 : 「의료정보 보호법(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, 1996)」상 환자의 의료정보는 수집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제3자 제공 및 공개에는 사전동의 필요

#### ○ (제재규정) 개별 법률에 따라 상이한 형벌 또는 행정벌을 규정

※ 예 : 형벌 - 「의료정보 보호법」위반시 \$250,000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

행정벌 - 「공정·정확한 신용거래법(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, 2003)」위반시 \$3,500달러 이하의 과태료

#### ○ (국외이전) : 미국EU 간 합의로 Safe Harbor 프라이버시원칙(세이프하버 원칙) 준수 미국기업에 EU내 개인정보 이전 허용하였으나 최근 무효화

※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EU에 대해 미국이 자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운 원칙

#### ○ (최근동향) 영역별 개별법적 접근을 취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사적 자치를 중시

- 사회변화, 신기술 등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이슈에 신속히 응답가능 장점

※ 예 : CCTV 감시, 개인정보 프로파일링, 아이디 도용, 온라인 프라이버시, RFID 프라이버시 보호 등

### 3 각국 개인정보 규제 비교

-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전체 처리과정에서 사전동의(Opt-in)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정의에 있어서도 보다 포괄적이며, 기타 선진국에 비해 개인정보 활용이 엄격히 법으로 규제되고 있음
  - (정의규정) 한국과 일본이 결합 또는 조합을 통한 개인정보 가능성을 포함하여 가장 넓게 규정
  - (동의규정) 기타 선진국의 경우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있어 Opt-out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한국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전체 처리과정에서 Opt-in 채택
  - (제재규정) 「정보통신망법」의 경우 시정명령제 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져 기타 국가에 비해 형벌규정이 강력

<각국 개인정보 규제 비교>

구분	국가	규제대상 개인정보	비고	
정의	우리나라	생존한 개인의 정보(예: 성명, 주민번호, 영상 등) +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식별가능 정보	· 미국 제외, 개인정보 정의에 대해 포괄적 규정  · 일본은 ‘조합(대조)이란 용어를 사용한 반면, 한국은 ‘결합’ 단어를 사용 : 한국이 개인정보를 가장 넓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	
	일본	생존한 개인의 정보(예: 성명, 생년월일 등) + 다른 정보와 쉽게 조합해 개인식별가능 정보		
	EU	지침		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 정보(예: 신분증 번호 또는 신체·생리·정신·경제·문화·사회적 요소 정보로 직·간접적 알아볼 수 있는 사람)
		규칙(안)		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 정보(예: 지침+이름, 지역정보, 고유식별자 또는 성적 정체성)
	미국	개별법상 상이(프라이버시, 금융정보, 소비자정보, 의료정보, 통신정보 등)		
동의	우리나라	수집등 처리에 사전동의 방식	·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경우만 개인정보의 전체 처리과정에 opt-in 방식 채택	
	일본	사전동의 및 사후동의 방식		
	EU	지침		사전동의 및 사후동의 방식
		규칙(안)		수집등 처리에 사전동의 방식
	미국	개별법상 상이(제3자 제공시 사전동의 방식 등)		
제재	우리나라	형벌 및 행정벌 혼재(망법의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)	· 우리나라의 경우 처리 과정을 구분해 상이한 제재 부과	
	일본	시정권고조치 위반시 형벌		
	EU	지침		없음
		규칙(안)		형벌
	미국	개별법상 상이(형벌 또는 행정벌)		

### 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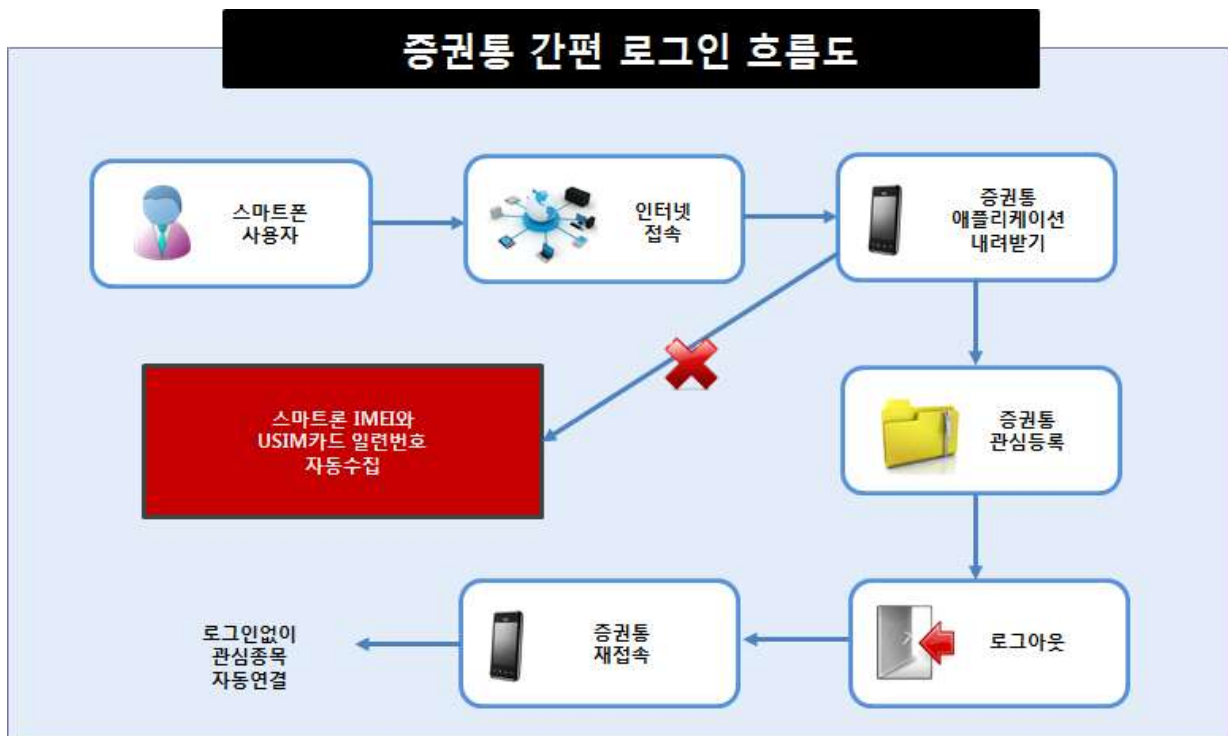
##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법제현황 및 해외비교

### 1 증권통 '간편 로그인'서비스

#### □ 주요내용

- 주식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“증권통”은 사용자들이 로그인 없이 사전에 등록한 관심종목을 볼 수 있도록 앱을 설계하기 위해 스마트폰 인증번호인 IMEI와 USIM 일련번호를 수집

※ 사용자들이 앱을 설치할 때 사용자의 스마트 폰으로부터 개인정보인 'IMEI(국제모바일 단말기 인증번호)와 USIM 일련번호의 조합' 정보를 읽어 오거나, 'IMEI와 사용자 개인 휴대전화번호의 조합' 정보를 읽어 와 서버에 저장한 다음, 사용자가 다시 접속하는 경우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비교하여 사용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별도 로그인 없이 바로 사용자가 등록해 놓은 관심종목을 보여주도록 설계



## □ 추진 중단이유

- IMEI나 USIM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보고 무단수집에 대해 범원 유죄판결
- 결합의 가능성에 대하여 입수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결합만 가능하면 개인정보라고 판시
  - 증권통 관계자는 IMEI나 USIM 일련번호는 특정개인에게 부여된 부호가 아니라 특정기기, 특정카드 등에 부여된 번호이고,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이용자가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
  - ※ IMEI정보는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일반인은 접근이 불가
  - 그러나 법원은,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정의에 결합의 용이성은 다른 정보의 '입수 가능성'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, 결합의 용이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IMEI나 USIM 일련번호도 개인정보라고 판시
  - ※ 기계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에게 부여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,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개인정보로 본다고 판단

## □ 개인정보 제도개선 요구사항

- 현 개인정보보호법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, 표현이 불분명
  - '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'이라는 표현이 불분명하여 어디까지 개인정보로 볼지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음
  - ※ 지금은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이지만 **잠재적 결합 가능성**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로 인정할지, 또는 다른 정보와 실제로 결합이 이루어져 **식별이 가능한 상태**가 되었을 때에만 개인정보로 인정할지 등
- ☞ 개인정보 정의에 대한 불명확성 제거 및 합리적 해석 근거 마련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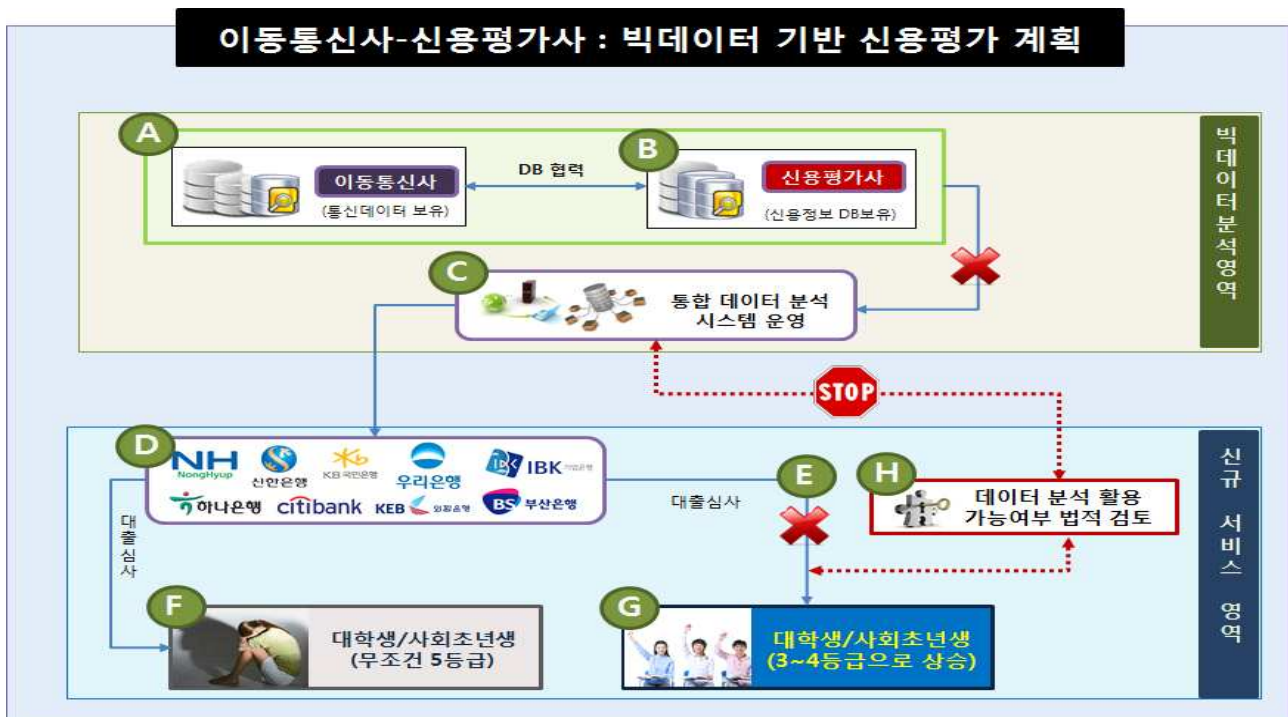
### <대안검토: 개인정보 정의 명확화>

- ①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·한정적으로 열거하고, 괄호 '결합'내용은 삭제
- ② 실제 결합이 이루어져 식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로 한정
- ③ 공개된 정보 또는 접근 가능한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로 한정 등

## 2 개인신용평가 전문기업의 신용평가 개선모델

### □ 주요내용

- ○○개인신용평가 전문기업은 이동통신사의 결제패턴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에게 보다 좋은 대출 등급을 제공하기 위한 융합 신용평점 작업 추진
  - ※ 자사의 개인정보데이터와 이동통신사의 통신 데이터의 매시업을 통해 통합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, 이를 기반으로 특정 계층의 신용 평점 작업을 진행하여 고객사인 은행 등에 개인별 신용 평가 등급을 제공한다는 계획
  - ※ 통신 사용량, 미수납 연체 등 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높은 신용등급 부여가 가능하다는 아이디어
- 대출이 어려웠던 학생 및 일부 계층에서 사회 적응 가능성을 높이고 은행 및 대출 기관에서는 보다 신뢰성있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대출 심사 가능



## □ 추진 중단이유

- 신용평가회사 - 은행 - 통신사간 비식별화를 통한 정보 융복합이 개인 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극적 사업 추진에 애로
  - ※ 법무팀에서도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
- 서로 다른 기관 간에 비식별 데이터 유통을 통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으나, 비식별화에 대한 기준 미비 및 법적인 근거 미비로 사업 추진 보류

## □ 개인정보 제도개선 요구사항

- 현재 방통위에서 비식별화 개념이 담긴 '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'(14.12)을 발표했으나, 비식별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활용은 어려운 상황
  - ※ 금융위에서도 개인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예외 규정에 따라 목적외 이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으나 의견이 분분
-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를 변경해야 비식별화가 완료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
  - ☞ 비식별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근거를 법적으로 제시할 필요

### <대안검토: 비식별화 기준 마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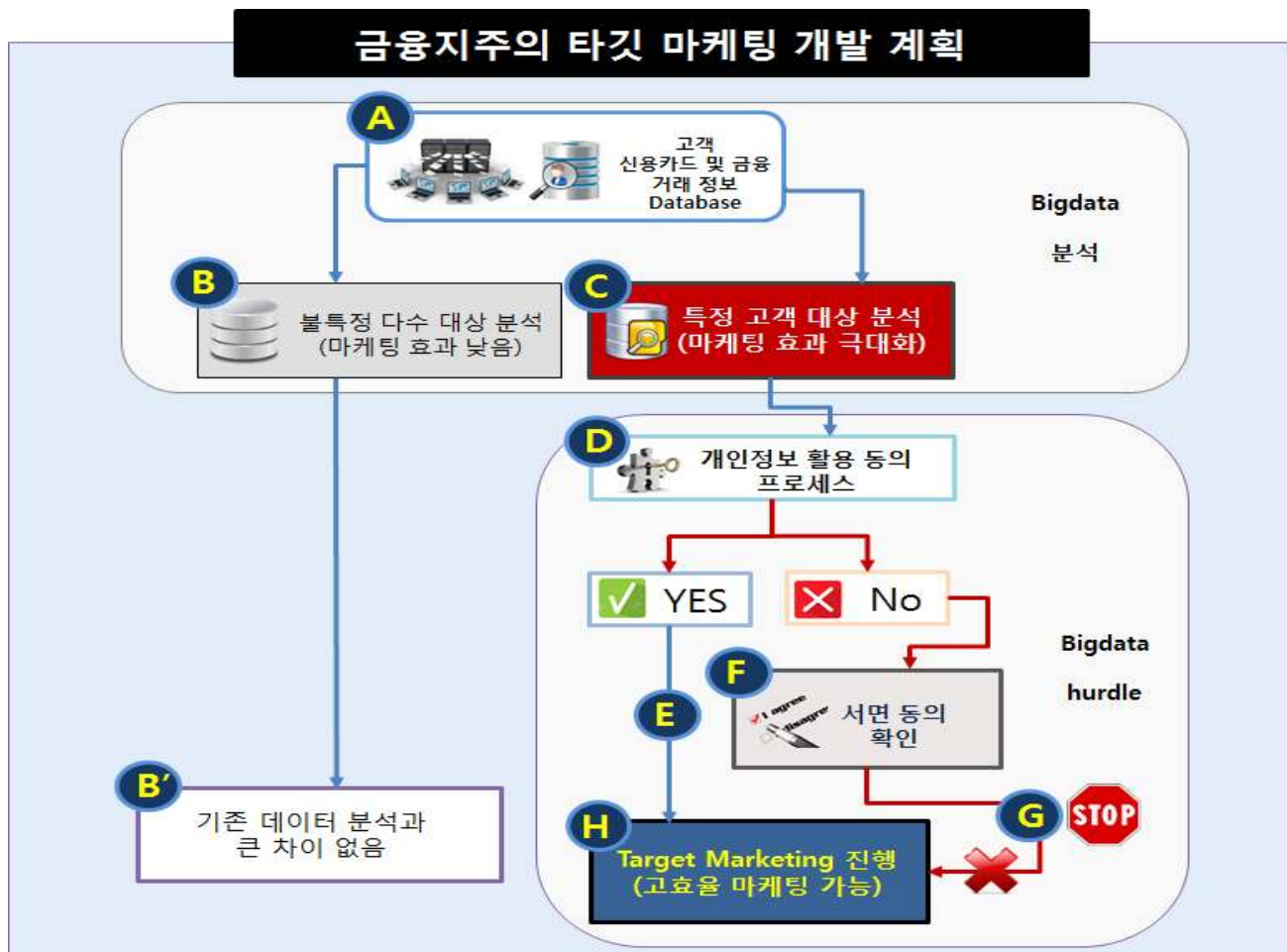
- ① 산업 분야별로 비식별화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
- ②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다시 비식별화하는 것을 의무화(강길부의원안)
- ③ 임시식별자\* 등 기술적 대안을 인정하여 제한적인 활용 허용

\*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OTP 개념의 암호화된 임시식별자로 치환한 후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이용기관이 상호 활용하는 방안

### 3 카드회사 빅데이터기반 타겟 마케팅

#### □ 주요내용

- ○○카드사는 자사 카드의 이용고객 및 금융 거래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타겟 마케팅을 전개하려고 계획
  - ※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현 마케팅 효과가 미미하여,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타겟 마케팅을 기획
- 이를 위해 모든 금융정보 및 거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특정 고객의 거래 패턴 및 지출 예측이 가능한 분석 시스템을 마련
  - ※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 및 거래 정보, 은행 거래 데이터의 분석작업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진행



## □ 추진 중단이유

-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에는 이들 타겟마케팅을 위해서는 고객 개별의 서면동의를 필요하다는 지침을 주고 있어 장애물로 작용
- 새로운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매번 서면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여 매우 번거롭고,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이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원인
  - ※ 또한 통합된 고객정보가 없기 때문에 중복 마케팅 등 고객 불만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

## □ 개인정보 제도개선 요구사항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시 반드시 고지 및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업계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 발생
  - 한편, 이용자 동의 시 사업자는 면책되고 모든 것은 이용자 책임에 해당함에 따라 사업자 입장에서 동의 만능주의 현상 초래
  - ☞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후동의(Opt-out)를 도입 검토 필요
- ※ 인터넷포털 업체에서 SK의 시럽과 유사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시험해 본 결과, 이용자들은 옵트인의 경우 1.4%만 선택한 반면, 옵트아웃 방식은 85%가 이용(15%만 취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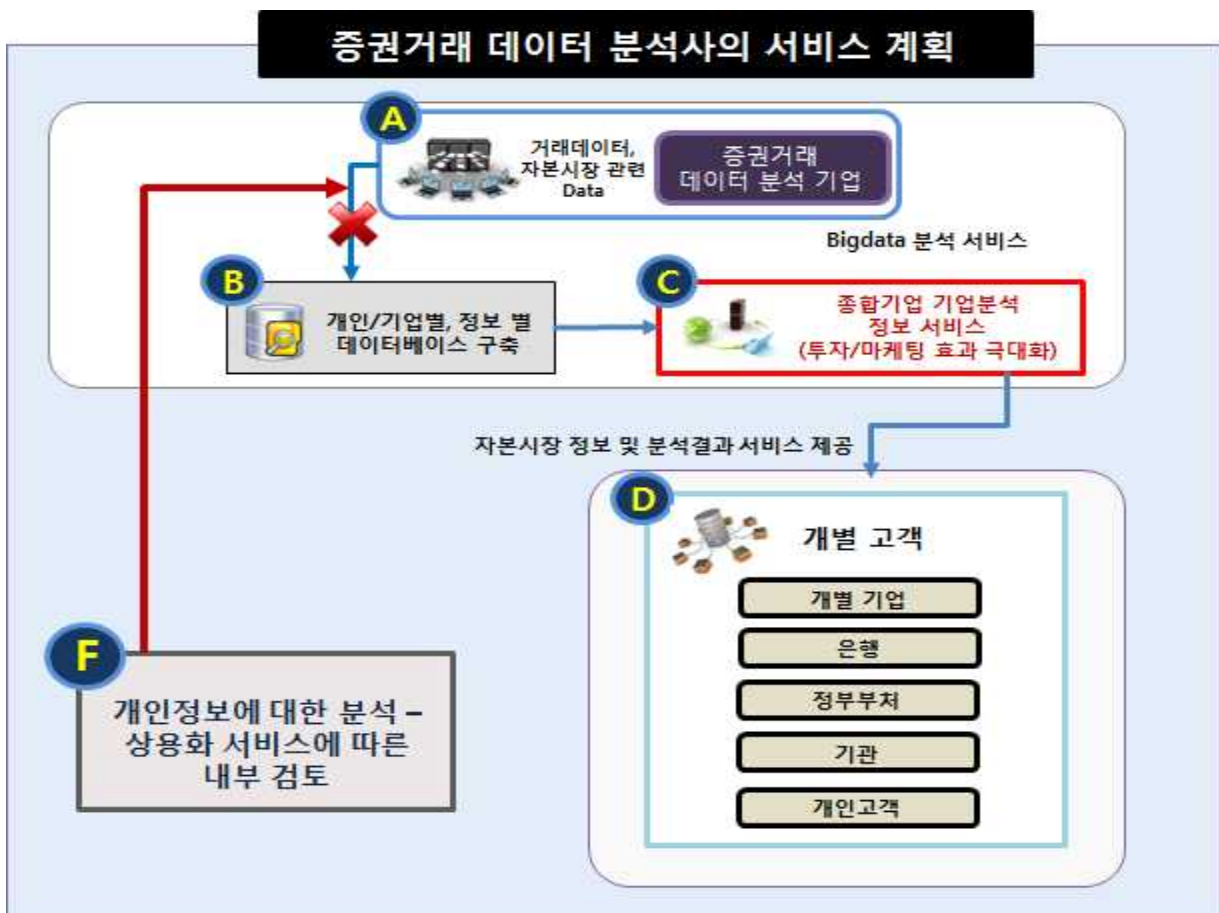
### <대안검토: 사후동의(Opt-out) 도입>

- ① 서비스 이용 등에 필수적인 사항은 동의가 아닌 명확한 고지로 처리하고, 선택사항만 동의 받도록 관련규정 개선
- ② 감염경로 역학조사 등 공익 목적 활용 또는 웨어러블기기·IoT 등 기술적 제약이 있는 경우 사전동의 대신 사후동의(Opt-out) 허용
- ③ 사후동의(Opt-out)를 전면 허용하되 관리감독을 강화

## 4 증권거래 데이터 분석

### □ 주요내용

- ○○자본시장 IT솔루션기업은 사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, 주식 거래 등의 데이터를 매시업하여 보다 진보된 분석 정보를 투자 수요에 공급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스템 구축 계획 마련
- 이를 위해 개인 거래, 기업 거래 및 각종 정형, 비정형을 모두 처리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은행, 정부부처, 기관투자자, 개인 고객 등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
- ※ 회사 내 각 부서에 요청하여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 받아 투자성향, 추천 항목 등을 도출 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



## □ 추진 중단이유

- 실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내 부서에서 개인 고객의 거래 정보를 분석할 경우 고객 정보에 대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여 사업 중단
  - ※ 카드사 사태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조항과 과징금 등 관련 규제를 한층 강화
-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에 대한 설득이 진행 중이나 법제화를 통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때까지 프로젝트는 중단

## □ 개인정보 제도개선 요구사항

-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위반 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반면,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, 과태료, 형사처벌 등 차등 적용
  -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경우 형사처벌 우려로 인해 이용자에게 빈번한 동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인 입장 견지 가능
- ☞ 직접적 형벌을 규정하지 않고 시정조치에 대한 위반시 형벌 또는 행정벌 부과 방식으로 전환 필요성 제기
  - ※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(「정보통신망법」 제32조의2)해 개인정보 침해시 보상측면이 강화되어, 균형적으로 제재규정 완화 필요성 제기

### <대안검토: 형사처벌 전 시정명령제도 도입>

- ① 정보통신망법에 시정명령 제도 도입
- ②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간 벌칙 수준의 형평성 제고

## 5 신용평가시스템 개선

### □ 주요내용

- ○○카드사는 소셜데이터를 비롯하여 거래정보, 학력에 따른 거래 정보, 정치성향 별 거래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매시업을 통해 신용 등급을 책정하는 알고리즘 개발 추진
  - ※ 카드사 내부 거래 데이터는 물론 PG사와 외부 신용평가 회사 데이터와의 매시업을 통해 보다 높은 예측력을 가지는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고자 함
- 이를 위해 카드사들은 신용평가회사의 데이터를 통합시키고 개인별 성향 데이터(나이, 성별, 거래정보, 학력, SNS활동, 인종, 수입, 지출 등)를 모두 통합하여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통해 통합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기획
  - ※ SNS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은 수많은 SNS 사용기록을 분석 후 이를 지표화하는 것으로 제도권 금융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(Credit Scoring System)과 더불어 대출신청자들의 소셜 신용도까지 접목한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



## □ 추진 중단이유

- ‘학력변수’의 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강한 제한이 중단의 가장 큰 이유
  - ※ 학력변수 활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있어 SNS 및 기타 데이터 매시업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사업을 중단
  - 이로 인해 내부 데이터 분석만 이루어지고 외부 데이터 및 감사에서 지적받을 만한 데이터는 모두 분석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

## □ 개인정보 제도개선 요구사항

- 민감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
  -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 이를 위한 처리제한 규정 존재(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)
    - ※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"민감정보"라 한다)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- ※ 정보통신망법 제23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, 신념, 가족 및 친인척관계, 학력(學歷)·병력(病歷),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·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민감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범위가 달라 처리에 혼란

### <대안검토: 민감정보 범위 명확화>

- ① 개인정보보호법과 망법간 민감정보 정의 통일화
- ② 처리제한과 관련하여 민감정보 뿐만 아니라 고유식별번호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 등의 문제도 종합 검토 필요

## IV

### 결론 및 시사점

-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 중
-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
  - ① (제도개선) 미래부·행자부(개인정보보호법)·방통위(정보통신망법)·금융위(신용정보법)·복지부(가칭 진료정보보호법) 등 주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균형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
  - ② (기술조치) 법제도 개선과 함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활용 안내서 마련, 관련 교육실시 등 병행 필요
  - ③ (활용지원) 빅데이터 유통 활용 관련 저해요소에 대한 상담 및 법률자문\*, 비식별화 등 기술적 컨설팅\*\*을 제공하는 클리어링 기능 강화
    - \* 개인정보 침해, 저작권 보호 침해, 불공정 거래(이용약관 등), 정산 등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거래 관련 사항 등
    - \*\* '15년도에는 개인정보 식별, 품질수준 등 기술 진단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검증 도구개발 및 서비스화 추진
  - ④ (공감대 형성) 컨퍼런스·토론회 등을 통해 해외규제 비교분석, 현행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사례 공유, 홍보 등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 중요